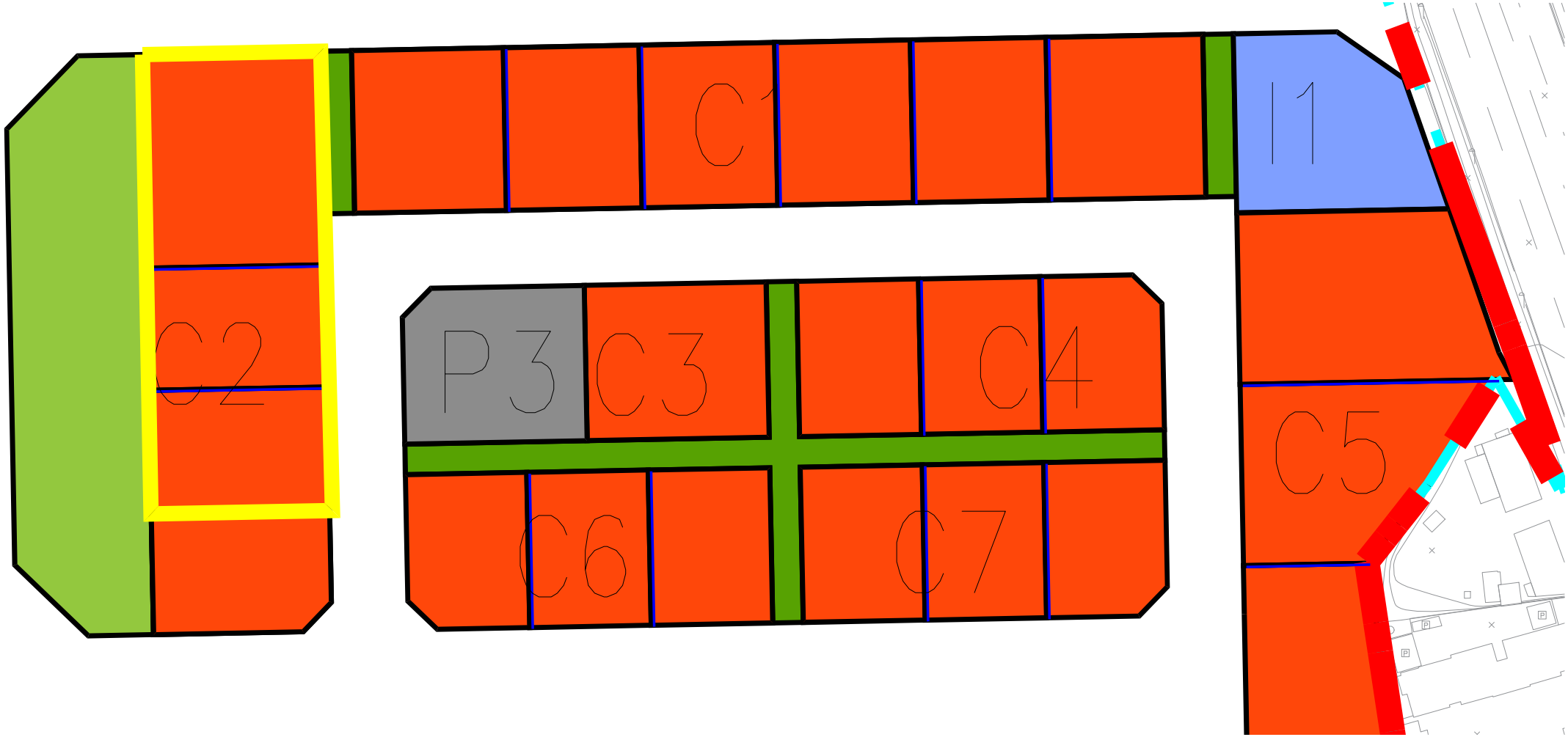
C1
I1
C2
P3
C3
C4
C5
C6
C7

▢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C	C1~C7	용 도	허용용도	1.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,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·라목 -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·다목, 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 - 제13호 운동시설 - 제14호 업무시설 - 제15호 숙박시설 - 제16호 위락시설 -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·세차장,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·전신전화국·통신용시설
			불허용도	1.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.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8호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
		건폐율		1. 60%이하
		용적률		1. 420%이하
		최고층수		1. 7층
		배 치		1.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구간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(지침도 참고)
		형 태		1. 가로변 저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를 적용하여 개방감 확보 2. 지붕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체감 있는 형태 적용
		색 채		1.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 유지 2. 돌출색이 큰 면적에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며, 외벽의 색채 변화로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 해소
		기타사항		1. 상업시설의 1층 층고와 옥외광고물 설치 높이를 조화롭게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